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준희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 **747** 발의년월일 : 2015년 9월 14일 발 의 자 : 박준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미경, 김희걸, 유동균,

우미경, 김인제, 이승로, 김기대, 강구덕, 남창진,

박양숙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관련 법령인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제7조의2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정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제7조의2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(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제11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
- 3.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) ① (생	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	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
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.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
	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
<u><신 설></u>	3.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
2.	4.
3.	<u>5.</u>
4.	<u>6.</u>
<u>5.</u>	<u>7. </u>
<u>6.</u>	8.
<u>7.</u>	9.
8.	<u>10.</u>
9.	<u>11.</u>
<u>10.</u>	<u>12.</u>
<u>11.</u>	<u>13.</u>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비용발생 요인
 - 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 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- 3. 미첨부 사유
 - 비용발생 요인 존재하지 않음
- 4. 작성자
 - 서울특별시의원 박 준 희